

개정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82. 8. 20개정)

(건설부령 제336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을 “국가기술자격증사본(영 제 2 조의 2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 4 조제 2 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특별전형 시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와 영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제 1 차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 7 호의 2 서식에 의한다.

제 8 조중 “영 제 8 조제 2 항을 “영 제 8 조제 3 항”으로, “별표 1 과”를 “별표 1 및 별표 1 의 2 와”로 한다.

제 10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사무가 영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 내용은 별지 제 15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 조제 1 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2 항중 “영 제 21 조 제 4 항”을 “영 제 25 조제 5 항”으로 한다.

제 15 조제 1 항중 “영 제 23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업체와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를 “법 제 2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체”로 한다.

제 1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 조 (조사 및 검사대상건축물등) ① 영 제 25 조 제 3 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당해 용도의 외 용도와 병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영 제 25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조서는 별지 제 27 호 서식 및 별지 제 27 호의 2 서식에 의한다.

제 18 조의 2 를 삭제한다.

제 23 조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고, 설계수급대장에 기재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 2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4 조 (설계도서의 비치·보관) 법 제 30 조 제 3 항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당해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10년간 그 사무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명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을 “건축사자격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으로 한다. [별표 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중 “영 제 26 조”를 “영 제 25 조”로, “확인서”를 “조사 및 검사조서”로 하고, 제 6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 7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비고
6. 법 제30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수교육을 거부·기피한 경우	1 월 이내의 폐쇄명령	
7. 기타 제 1 란 내지 제 6 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및 건축법에 위반한 경우	제 1 란 내지 제 6 란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함	

[별지 제 1 호서식]중 “건축사법 제 2 조 제 2 항”을 “건축사법 제 2 조제 2 호”로 한다.

[별지 제 5 호서식]중 “건축법시행규칙 제 2 조 제 3 항”을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2 조 제 3 항”으로 한다.

[별지 제 7 호 서식]중 “동법시행령 제 5 조”를 “동법시행령 제 4 조”로 한다.

[별지 제 7 호의 2 서식]중 “□ 제 14 조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별지 제 10 호 서식]의 주의사항란의 2 중 “15일내”를 “30일내”로 한다.

[별지 제 12 호 서식]중 “건축법 제 8 조제 3 항”을 “건축사법 제 8 조제 3 항”으로 한다.

[별지 제 14 호 서식] 및 [별지 제 16 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17 호 서식]중 “건축사법시행령 제 21 조제 4 항”을 “건축사법시행령 제 25 조제 5 항”으로 하고, “건설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 18 호 서식]중 “건설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 20 호 서식] 및 [별지 제 21 호 서식]중 “건축사법시행령 제 23 조제 4 항”을 “건축사법 제 25 조제 2 항”으로 한다.

[별지 제 22 호 서식]중 “플랜트엔지니어링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를 “용역업체”로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의 주의사항란의 2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설 계 도 서 신 고 서					처 리 기 간	
					2 일	
① 건축주				② 지역지구	지구	
③ 대지위치				④ 용도		
⑤ 대지면적	M ²	⑥ 건축면적	M ²	⑦ 건폐율	%	
⑧ 공사규모	천원	⑨ 건축연면적	M ²	⑩ 용적율	%	
⑪ 구조	조	⑫ 규모	지하층지상층	⑬ 공사종별		
⑭ 설계자		⑮ 면허번호		⑯ 설계년월일	년 월 일	
⑰ 기타						
건축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제 호 설계건축사 (인) (면허번호) 건축사 (인) (면허번호) 건축사 (인) (면허번호)						
대한건축사협회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설계도서 사본 1 부 2. 설계계약서 사본 1 부					없음	

조 사 및 검 사 조 서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M ²)		지역지구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지하 층
연면적 (M ²)		용도	
구조		설계년월일	19 . . .
공사종별		조사 및 검사년월일	19 . . .
상기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사법 제2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현장조사 및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 저촉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인함.			
19 . . .			
첨부: 1. 현장조사서 1 부 2.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서 1 부 조사 및 검사자:			
건축사면허번호 : 제 호 건축사사무소등록번호: 제 호 사무소명 : 건축사성명 : (인) (시 장 · 군 수)			
귀 하			

현 장 조 사 서

구 분		조 사 내 용
대 지 현 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대지의 안전여부	
	대지내 배수지장 유무	
	토지의 형질변경 필요유무	
	대지내 지상, 지하의 지장물 유무	
	대지내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 유무	
	인접대지와의 고저차	
도 로	대지에 접하는 도로폭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 및 폭	
	대지에 접한 도로의 사용 지장 유무	
	대지와 도로와의 고저차	
기 타	기존 건축물 여부 및 적법 여부	
	대지경계선과 인접건물과의 거리	
	대지부근의 고압선과 신청 건물과의 최단거리 및 높이	
종합의견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1. 건축개요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목		
	지 구	지 구	전면도로폭	M	
	면 적	M ²	도로에접한 길이	M	
용 도	주 용 도		기 타 용 도		
규 모	구 분	신 축	비 신 축		공 사 부 분
			기 존	신 청 부 분	
		건축면적 (M ²)			
		연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공사종별		
착공예정일	19		준공예정일	19	
타 법령과 관계					

2. 층별면적

층별										계
구분	신축									
	비신축									
	기 존									
	신청부분									
계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가. 대 지

- (1) 지목은 _____로서 지목변경 불필요함.
- (2) 토지의 소유 및 권리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이 가능한 내용

내 용

- (3) 대지면적은 _____M²로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 M²에 적합함.
- (4) 대지의 조성
 - 가) 굴착부분이 없음.
 - 나) 대지조성의 필요가 있으며, 건축법(이하 이표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함.
-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지임.

가) 폭 M 도로에 M 접한 대지임.

나) 폭 4 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M 후퇴하여 건축물을 배치 하였음.

다) 폭 M 길이 M 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이므로 도로중심선에서 M 후퇴하여 건축토록 설계되었음.

나. 배치계획

(1) 건축선에 저축되지 아니하게 설계되었음.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는 다음표와 같음.

(단위 : cm)

구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정북 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 안의 건축물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3)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함.

(4)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및 기타사항은 지구내의 건축조례에 적합함.

다. 용도제한

대지의 입지가 지역 지구로서 건축법 시행령 (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 제 조 및 지구조례의 규정에 적합함.

라. 규모제한

(1) 전폐율

전폐율은 %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함.

전폐율은 %로서 강화지정된 기준 %에 적합함.

(2) 용적율

용적율은 %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함.

용적율은 %로서 강화지정된 기준 %에 적합함.

용적율은 %로서 조례의 기준 %에 적합함.

(3)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M로서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M이므로 법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함.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이하 8M이하로서 주거전용지역의 절대고 제한에 적합함.

건축물의 높이는 M로서 지구조례의 규정에 적합함.

건축물의 높이는 M로서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M 띄우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영 제90조의 규정에 적합함.

마. 구조 및 안전

거실의 바닥높이는 지표면으로 부터 M로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적합함.

층 구조의 건축물로서 대지, 건축물, 옹벽 등은 구조상 안전함.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함. 계단의 구조 및 치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은들과 은돌용 굴뚝의 구조 및 재료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었음.

건축물의 구조는 규칙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변소설치는 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바. 채광 및 환기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한 유효 채광면적의 비율은 %로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의 채광면적 비율 1/10이상임.

환기면적은 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사. 지하층 설치

지하층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님.

지하층 설치 대상 건축물로서 지상을 연면적 M² 로서 1/10이상인 M² 를 설치함.

영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 설치가 면제 됨.

산출근거

지하층의 구조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적합함.

아. 대지내의 조경

대지의 면적이 이므로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 M² 가 확보됨.

산출근거

자. 열손실 방지

열손실방지 의무대상이 아님.

열손실방지 대상으로서 재료를 두께 cm로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며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함.

차. 기타사항

(1)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법 제47조 및 영 제98조의 규정에 적합함.

(2)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함.

(3) 배수시설은 하수도법의 규정에 적합토록 설계되었음.

(4) 오수 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 및 용량 배수관의 규정등은 오물 청소법의 규정에 적합토록 설계되었음.

(5) 정화조의 방류구와 하수도의 연결상태는 양호하게 설계되었음.

(6)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하게 설계되

3. 관계 법령에의 저촉여부 (이면)

가. 대지의 안전 또는 토지굴착부분의 정리, 조경 등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나. 도로 및 건축선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다.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라.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대지안의 공지등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마.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바. 건축물의 방화, 소방 또는 피난상 안전에 관한 규

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사. 건축물의 채광, 환기, 위생등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아.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자.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차. 지하층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규정에

- 적합함
-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상기조사 및 검사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준공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설 계 수 급 대 장

①연번	②수급 년월일	③대지 위치	④ 건축주	⑤ 대지면적 (㎡)	⑥ 건축 면적(㎡) ⑦연면적 (㎡)	⑧용도	⑨구조	⑩설계자	⑫설계	⑬도서	⑭허가일자	⑯ 착공일	⑰ 준공일	⑱비고
								⑪감리자	⑫원성일	⑬신고일	⑭번호			

[별표 1의 2]

과 목	출 제 범 위	출 제 방 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구조	필기시험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계획	계획원론 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설계	실기시험
건축설비	설계설명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